

대전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1101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용호

변론 종결2022. 8. 25.

판결 선고2022. 9. 1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346,424원과 그 중 29,166,710원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1. 4.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2021타배485 사건에 관하여
2022. 3. 25.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B가 배당받을 145,816,204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공탁계)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7. 7. 4.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과목	소공인특화자금(운전자금)
대출금액	50,000,000원
대출개시일	2017. 7. 6.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지급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

나. 위 약정 당시 피고 A은 대출거래기본약관 제2조에 의하여 이자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원고가 정한 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곧 갚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 A에게 2017. 7. 6. 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위
피고는 2020. 11. 7.경 연체를 시작하여 2021. 2.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 제3조(이자율 및 지연배상금) 및 이 사건 대출거래기본약관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3조(비용의 부담)에 근거하여 현재 피고 A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9,346,424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9,166,710원	137,762원	41,952원	0원	29,346,424원
-------------	----------	---------	----	-------------

마.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21. 2. 5.부터 현재까지 연 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결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29,346,424원(대출잔액 29,166,710원 + 이자 137,762원 + 연체료 41,952원) 및 그 중 29,166,7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기한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21.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4.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대출금 청구를 인용한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A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A은 피고와 2019. 1. 18.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8. 접수 제9038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20.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16. 접수 제95640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위 각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1	2013. 5. 3.	C조합	338,500,000
2	2015. 5. 19.	C조합	57,600,000
3	2016. 10. 24.	주식회사 D	240,000,000
합계	636,100,000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및 배당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은 「E 공공주택지구」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수용개시가 이루어져 이를 원인으로 2021. 11. 24. 그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전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금제6781호로 공탁하였고, 대구지방법원 F로 배당절차가 이루어졌다.

3) 배당기일인 2022. 3. 25.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조합에 채권금액 전액인 347,327,865원이, 주식회사 D에 역시 채권금액 전액인 202,125,202원이 각 먼저 배당되었고, 그보다 후순위인 위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물상대위권 행사(대구지방법원 2020타채127669호)를 한 피고 B에게 채권금액 600,000,000원(근저당권자 B의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을구10번) + 근저당권자 B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구11번)) 중 145,816,204원이 배당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A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체는 2020. 11. 7.경 시작되었지만 그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20. 6. 16.경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피고 A이 피고 B와 이 사건 제2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20. 6. 17.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원고 및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원고를 해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서 사해의사가 있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위 배당금지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일자는 2017. 7. 6.로 이 사건 제1, 2설정계약일 이전이기는 하다1). 그런데 원고는 연체개시일 등과 관련한 사해의사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2 설정계약만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 2) 그런데 피고 B가 배당받은 145,816,204원은 이 사건 제1설정계약에 기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00,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어 이 사건 제2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 B가 배당받은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3) 즉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제2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김성대

별지

- 1) 다만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 근저당권설정일은 2007. 10.경으로 피고들 사이의 금전 거래는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졌다.